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한 영 수**

국 | 문 | 요 | 약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가중과 보안처분의 확대·강화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그 ‘정당성’과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연쇄살인이나 아동에 대한 성폭행(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공포가 대중매체에 의하여 증폭되어 일반시민들에게 전달됨으로써 비판의 목소리는 그냥 묻혀 버리고 입법자는 더욱 과감하게 형벌을 가중하고 주저함 없이 외국의 다양한 보안처분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였다.

이 글은 형벌가중이나 보안처분의 확대의 실효성 여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려면, 설정된 목표와 이를 위해 선택한 수단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가중이나 보안처분의 확대·강화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실제로 이러한 목표가 형벌의 가중이나 보안처분의 확대·강화를 통하여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연구방법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실증적 연구결과를 문헌조사 위주로 진행하였다. 첫째, 위험한 범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에 의한 강력범죄(흉악범죄)의 변동추이를 살펴보고,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둘째, 법정형의 하한 설정 및 상·하한 상향조정의 취지가 형량증가에 의한 재범억제효과에 있으므로 법정형 상향조정이 실제로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형량증가가 재범방지효과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실증적 연구자료 위주로 분석하였다. 셋째, 보안처분의 확대정책 중에서 특히 전자감독의 효과성 여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법정형의 상향조정’과 ‘보안처분의 확대·강화’로 요약될 수 있는 우리나라 형벌정책은 그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대중매체에 의하여 가공된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공포로 형성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형벌가중정책이나 보안처분의 확대정책의 이면에는 형벌가중과 보안처분의 확대가 재범억제효과 내지 범죄방지효과가 있다는 일반대중의 신뢰가 깔려 있다. 그러나 형사제재의 효과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실효성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27-B00637)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형사정책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선택하였다면, 그 수단(형사제재)이 설정된 목표(범죄예방)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위험한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안처분을 도입하였다면, 먼저 시범적으로 활용해보면서 장기간 인내심을 갖고 그 실효성 여부를 조사하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작용을 비교하여 긍정적인 요소는 강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감소시켜야 한다. 법정형 상향조정의 실효성도 이러한 경험적 연구의 뒷받침을 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 주제어 : 위험한 범죄자, 성폭력범죄자, 형사제재, 양형기준, 전자감독

I. 서론

위험한 범죄자란 잔인하고 흉포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사람의 생명·신체·정신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범죄자’를 말한다.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대책은 주로 ‘형벌가중정책’과 ‘보안처분 확대·강화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가중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1997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같은 법 제8조의2)으로 규정하였다가, 2008년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했고, 2010년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같은 법 제7조)으로 또 다시 상향하였으며, 2011년에 개정된 성폭력특례법 제7조는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였다. 2010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유기형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할 경우 25년에서 50년으로 상향 조정한 것도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강화요구를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형

벌가중정책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13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종전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개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데서도 잘 드러난다.

새로운 보안처분은 대체로 성폭력범죄자에게 먼저 도입한 후 점차로 그 적용대상을 다른 위험한 범죄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보안처분의 강도(強度)도 점차 높여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감독(전자발찌)제도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국한하여 도입한 이후 미성년자유괴범, 살인범, 그리고 최근에는 강도범에게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전자감독기간도 처음에는 최장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가, 10년으로 높였고, 또 다시 30년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도 지금은 인터넷 열람에 더하여 우편고지도 하고 있다.¹⁾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가중과 보안처분의 확대·강화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그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형벌가중 또는 보안처분 도입·확대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많은데, 그 비판논거로는 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보충성의 원칙, 책임원칙 등 주로 근대형법의 지배원리를 내세우고 있다.²⁾ 그러나 잔인한 연쇄살인이나 아동에 대한 끔찍한

- 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관련법령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김지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평가연구(I) -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2012), 147면 이하;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법학, 제33권(2011.6), 363~372면; 정신교,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예방적 효과, 법학연구 제38집(2010.8.25), 271~274면 참조.
- 2) 권오걸, 현행 보안처분제도 개관, 법학논고 제22집(2005.6), 145면; 김상호, 성폭력특례법 제7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제54호(2012.2), 397면 이하;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2011·가을), 34면 이하, 42면; 김혜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현황과 개선방안, 보호관찰 제10권 2호(2010), 16면 이하; 김혜정, 보안처분제도의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2호(2004 겨울) 특집호, 476면 이하; 류병관, 성충동약물치료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제32집 제2호(2012.8), 435면 이하; 박경철, 최근의 성범죄 대응방안의 헌법적 문제점, 강원법학 제33권(2011.6), 19면 이하; 박봉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형사정책적 검토, 법학연구 제47집(2012.8), 181면 이하; 박찬걸, 아동대상 강력범죄 방지를 위한 최근의 입법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4호(2010.6), 17면 이하; 신중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2011.2), 75면 이하; 송영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의 소급효,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4호(2011·겨울호), 223면 이하; 원형식, 상습범과 누범의 가중처벌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2호(2004 겨울) 특집호, 577면 이하; 원혜옥,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보호관찰 제12권 제2호(2012년), 300면 이하; 윤영철,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형사정

성폭행(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함께 흉악범죄에 대한 공포가 대중매체에 의하여 증폭되어 일반시민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그냥 묻혀 버리고 입법자는 더욱 ‘과감하게’ 형벌을 가중하고 ‘주저함 없이’ 외국의 다양한 보안처분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그 적용대상도 확대하였다.³⁾ 적어도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작금의 형벌정책에 있어서는 범죄억제의 필요성이 근대형법의 주요원리에 입각한 정당성 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가중정책과 보안처분확대정책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를 여기서 다시 하는 것은 기존의 비판논거를 다시금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수단의 ‘실효성’에 관하여 논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형벌가중이나 새로운 보안처분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제외하고, 가중된 형벌과 새로운 보안처분이 범죄억제효과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실효성 여부는 설정된 목표와 이를 위해 선택한 수단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함으로써 판단될 수 있다.⁴⁾ 그러므로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가중이나 보안처분의 확대·강화를 통하여 추구하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실제로 이러한 목표가 형벌가중이나 보안처분 확대·강화를 통하여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실증적 연구결과를 문헌조사 위주로 살펴보고,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과 보안처분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위험한 범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

책연구 제19권 제3호(2008 가을), 210면 이하; 이상경,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처분의 헌법적 재조명, 헌법판례연구 제11호(2010.2), 107면 이하; 이주일, 형법개정과 형법의 제한적 역할, 법학연구 제42집(2011.5.25), 243면 이하; 정재준, 물리적 거세법안의 의료법적 성격과 한계,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제1호(2012), 21면 이하; 최상욱,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22권 제2호(2011), 62면; 최상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제31권 제3호(2011.12), 327면 이하; 한인섭 외 5인 공저, 형법개정안과 인권 (2010), 159면 이하; 황만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최근 경향과 쟁점, 한양법학 제22권 제2집(2011.5), 469면 이하.

3) 비슷한 취지에서 김태명, 앞의 논문, 31면 이하.

4) 형사정책수단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방법론에 관한 외국연구결과를 소개한 글로는 최준혁, 형사정책적 수단의 범죄예방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 보호관찰 제12권 2호(2012년), 265면 이하 참조.

에 의한 강력범죄(흉악범죄)의 변동추이를 살펴보고,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다. 둘째, 법정형의 하한 설정 및 상·하한 상향조정의 취지가 형량증가에 의한 재범억제효과에 있으므로 법정형 상향조정이 실제로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반영되더라도 형량증가가 재범방지효과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실증적 연구자료 위주로 살펴본다. 셋째, 보안처분의 확대정책 중에서 특히 전자감독의 효과성 여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화학적 거세(성충동약물치료명령)와 신상공개(성범죄자 신상공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도입·확대의 실효성 여부에 관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증적 연구결과를 검토한다.

II. 위험한 범죄자

1. 위험한 범죄자의 의미

‘위험한 범죄자’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범죄자’를 의미한다.⁵⁾ 다만,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를 반복하는 범죄자는 여기서 제외된다. 즉, 범죄피해가 심각하여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를 ‘위험한 범죄자’라고 말할 수 있다.⁶⁾ 예를 들어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방화와 같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잔인하고 흉포한 수법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다. 또한 위험한 범죄자는 아동·여성·노인·장애인처럼 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주로 범행대상으로 삼거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위험한 범죄자’의 개념은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첫째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둘째 범죄피해가 중대하며, 셋째 방어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주로 범행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

5) 이른바 ‘고위험범죄자’를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정의하는 견해로는 한상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Ⅰ) - 고위험범죄자관리에서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의 협력강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2012), 17면 이하.

6) Walter, Kriminologische und kriminalpolitische Probleme mit “gefährlichen Straftäter”, Rehn/Wischka/Lösel/Walter(Hrsg.), Behandlung “gefährlicher Straftäter”, 2001, S. 5f.

인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무동기 범죄(motiveless crime)⁷⁾의 행위자인 경우가 많다.

2. 위험한 범죄자에 의한 강력범죄(흉악범죄)의 증가현상

이른바 ‘위험한 범죄자’로 포섭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강력범죄(흉악범죄)의 발생건수와 변동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그 현황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백서와 같은 국가의 공식적 범죄통계자료가 강력범죄(흉악범죄)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준거점이 될 수 있다. 검찰통계사무규정에 따라 ‘강력범죄’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를 지칭하는데, 여기서 특히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특례법상의 성폭력사범 포함) 및 방화의 죄를 ‘흉악’범죄로 별도로 구분하여 통계를 내고 있다.⁸⁾

<표1>은 강력범죄(흉악)의 죄명별 발생건수와 증감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971년부터 2000년까지는 5년 단위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1년 단위로 강력범죄(흉악)의 발생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발생건수는 1971년 4,040건에서 2000년 17,780건으로 약 4.5배 증가하였다. 살인은 1971년 620건에서 2000년 964건으로 약 1.5배, 강도는 1,067건에서 5,349건으로 약 5배, 강간은 2,022건에서 10,189건(성폭력범을 제외할 경우 6,982건)으로 약 5배, 방화는 331건에서 1,278건으로 약 3.5배 증가하였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흉악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⁹⁾

7) 무동기 범죄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상균,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3호(2009), 7면 이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개념에 관한 설명은 박순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호(2003), 206면 이하.

8) 강력범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한상암/신성원,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실태 및 경찰의 효율적 대처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2호(2006), 249면 이하 참조.

9)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살인범죄통계자료를 상세히 분석한 강은영/박형민,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2008), 103면 이하와 비교.

〈표 1 강력범죄(흉악) 죄명별 발생현황〉

연도 \ 죄명	합 계	살 인	강 도	강간 (성폭력범 포함)	방 화
1971	4,040	620	1,067	2,022	331
1976	5,341	556	1,380	3,087	318
1981	8,125	625	2,504	4,568	428
1986	8,860	617	2,695	5,002	546
1991	9,619	630	4,195	5,519	1,048
1996	12,155	690	3,586	7,158	721
2000	17,780	964	5,349	10,189	1,278
2001	18,480	1,064	5,546	10,446	1,375
2002	17,759	983	5,953	9,435	1,388
2003	20,416	1,011	7,327	10,365	1,713
2004	19,539	1,082	5,762	11,105	1,590
2005	19,941	1,091	5,266	11,757	1,827
2006	21,006	1,064	4,684	13,573	1,685
2007	20,922	1,124	4,470	13,634	1,694
2008	22,987	1,120	4,827	15,094	1,946
2009	25,791	1,390	6,379	16,156	1,866
2010	27,482	1,262	4,395	19,939	1,886

※ 출처: 범죄백서(2011) 62면, 〈표-15〉, 범죄백서(2001) 54면, 〈표-17〉에서 발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¹⁰⁾ 전체 강력범죄(흉악)의 발생건수는 2001년 14,896건에서 2010년 27,482건으로 1.84배 증가하였고,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흉악) 발생건수도 2001년 31.4에서 2010년 54.4로 1.73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살인은 약 1.19배, 강간(성폭력범 포함)은 1.91배, 방화는 1.37배 증가하였고, 강도는 2000년대 들어서서는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¹¹⁾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지난 15년간 살인·방화·

10) 경찰청 통계자료를 근거로 ‘고위험범죄현황’을 분석한 한상암, 앞의 논문, 81면 이하 비교.

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토대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성폭력, 폭력 범죄의 발생 추이를 상세하게 분석한 바 있는데, 여기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영실 외 28인 공저,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0), 61~91면.

강간(성폭력범 포함) 범죄가 약 2~3배 증가하였다.

강력범죄(흉악범죄)의 증가현상을 통해 ‘위험한 범죄자’의 변동추이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 범죄통계상의 강력범죄(흉악범죄)발생률이 시계열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실제로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위험한 범죄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강력범죄의 발생률 자체가 높지 않다면, ‘위험한 범죄자’의 수가 실제적으로 많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2010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10)에 의하면, ‘고도로 발전한 국가(인간개발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군에 속하는 42개국 중에서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살인사건지수(2003~2008년)가 2.3으로 8번째로 높은 국가이고, 범죄에 대한 안전도(perception of safety)는 60%로 하위 5위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다.¹²⁾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강도사건지수는 10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성폭행피해율은 3%로 중간 정도 수준에 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살인사건지수는 0.5, 강도사건지수는 3, 성폭행피해율은 1%로 매우 낮고, 안전도는 73%로 우리나라보다 높다.¹³⁾ 국가별로 범죄통계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제비교수치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흉악범죄 발생건수가 낮은 수준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¹⁴⁾

국가의 공식적 범죄통계상의 강력범죄증가율은 ‘암수’범죄의 존재로 인하여 실제적인 범죄증가현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¹⁵⁾ 수사기법의 발달이나 피해신고율의 제고에 따라 수사·사법기관의 범죄인지를 상승의 결과로 인하여 마치 범죄가 증가한 것과 같은 착시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7년까지 10년간 범죄통계상의 흉악범죄의 급증이 실제 사건의 증가현상에

12)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180면.

(http://hdr.undp.org/en/media/HDR_2010_EN_Complete_reprint.pdf)

13)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180면.

14) 같은 취지로 김두열/김지은,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한국개발연구 제31권 제2호(2009년), 168면.

15) 전영실 외 28인 공저,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60면.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분석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의 흉악범죄의 통계적 증가를 단순히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율 상승이나 범죄피해자의 신고 증가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고, 흉악범죄가 실제로 증가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렀다.¹⁶⁾ 그 논거로는 살인이나 방화의 경우 신고사건의 비율이 높은 범죄에 속하여 범죄피해 신고비율이 갑자기 증가하지 않으며, 외환위기 전후로 경찰력이 급증하지도 않았으므로 수사기관의 흉악범죄 인지율의 급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¹⁷⁾ 다만, 성폭력범죄의 경우 그 동안 위낙 암수범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¹⁸⁾ 피해신고의 증가가 인지사건의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대중매체에 의한 위험한 범죄자의 가공 및 모럴 패닉

일반적으로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관념은 현실세계에서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에 의해 재현된 유사현실 속에서 간접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¹⁹⁾ 흉악범죄를 일반시민이 직접 개인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²⁰⁾ 그런데 대중매체는 범죄현실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상업적 이유 때문에 대중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며 심지어 가공하기도 한다.²¹⁾ 최근 우리나라에서 특정 언론매체의 범죄기사를 연구 분석한 논문들에 따르면, 범죄기사의 내용이 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규명 및 해소방안에 대한 심층보도보다는 단발성의 흥미 위주의 사건 중심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한다.²²⁾ 대중매체의 범죄기사가 범죄에 대한

16) 김두열/김지은, 앞의 논문, 169면.

17) 김두열/김지은, 앞의 논문, 169-170면.

18) 최인섭/김성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1996), 114면 이하 참조.

19) Walter, 앞의 논문, S. 8.

20) 권인숙/이화연,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 언론의 아동 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50권 2호(2011), 88면.

21) 고비환, 선정적 범죄보도가 중형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그 완화책으로서 사회적 관용의 필요성,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제32집 제2호(2012.8), 405면 이하.

22) 홍지아, 신문기사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성폭력의 의미구성: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보도를 중심으로

정확한 사실의 전달과 범죄문제에 대한 심층진단을 하기보다는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더 유발할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보다 선정적이고 충격적인 기사로 가공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대중매체의 범죄재현은 실제 범죄현실과는 무관하게 매우 비정상적이고 자극적인 범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²³⁾ 최근 들어서서는 특히 성폭력범죄의 일탈성에 과도하게 주목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들을 극히 병리적인 인물로 규정짓고 이러한 소수의 범죄자를 ‘짐승’이나 ‘괴물’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묘사하여 다수의 일반대중과 분리시키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²⁴⁾ 예를 들어 아동에 대한 성폭력(살인)사건이 발생할 때 해당 범죄자를 ‘사이코패스’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범죄자를 우리 일반인들과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사이코패스란 일반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죄책감이나 후회를 못 느끼며, 대인관계에 있어 냉담, 거만, 교활한 특성을 보이고, 충동적 또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을 지녀, 잠재적으로 범죄 위험성을 지닌 자”로 정의할 수 있다.²⁵⁾ 대중매체에 의한 이른바 ‘사이코패스 만들기’ 보도는 일종의 모럴 패닉(moral panic)으로 이어진다.²⁶⁾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범죄보도는 일반인들에게 공포와 불안감 및 혐오감을 초래하여 범죄자에 대한 집단적 증오심을 유발시키고, 범죄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적대적 반응을 보이도록 한다.²⁷⁾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안전에 대한 과민반응을 야기함으로써 합리적인 형벌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게 한다. 사이코패스와 흉악범죄와의 관계를 고도의 비정상성이라는 공통분모를 매개로 묶어버림으로써 연쇄살인이나 성폭력살인

로, 한국방송학보 제23권 제5호(2009년), 473면 이하; 최석운, 사이코패스 범죄보도 젠더 담론, 충남대 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1호(2010년), 180면 이하; 양정혜, 뉴스 미디어가 재현하는 범죄현실: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프레임, 언론과학연구 제10권2호(2010.6), 356면 이하.

23) 양정혜, 앞의 논문, 334면.

24) 같은 취지로 김태명, 앞의 논문, 31면 이하.

25) 안성조/서상문, 사이코패스 I (2009년), 133면; 사이코패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신동준, 현대 사회의 ‘괴물’, 사이코패스 이해하기, 현상과 인식 2011 봄·여름호, 150면 이하와 안성조,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 형사법연구 제20권 제4호(2008·겨울), 170면 이하 참조; 특히 연쇄살인범과 연관하여 사이코패스의 개념을 설명한 글로는 강은영/박형민,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2008), 63면 이하.

26) 양정혜, 앞의 논문, 351면.

27) 고비환, 앞의 논문, 407면.

과 같은 흉악범죄의 원인을 사이코패스의 비정상적 일탈행위로 규정짓고, 범죄발생의 또 다른 원인인 사회구조적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²⁸⁾

III. 형벌가중정책의 실효성

1. 지속적인 법정형 상향 조정

가. 형사특별법의 제·개정에 의한 ‘특정~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 조정

1953년에 형법이 제정된 이후 대부분의 형벌가중은 형법개정이 아니라, 특별법의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²⁹⁾ 특별법의 제·개정에 의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입법방식은 1961년에 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다. 1966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을 제정하여 수뢰죄, 관세법위반, 조세포탈, 산림법위반, 통화위조, 마약범죄 등을 특정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설정하거나 높이는 방식으로 가중 처벌하였다. 이후 특가법은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을 제외하더라도 총 19차례에 걸쳐 그 내용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도주운전, 상습강도·절도, 범죄단체구성, 위험운전치사상의 죄 등에 관한 가중처벌규정을 추가하였다. 이처럼 특별법을 제·개정하여 ‘특정~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설정하거나 상향하는 입법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어느덧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 입법관행으로 굳어졌다. 198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기·공갈, 횡령·배임의 죄에 대해서는 그 이득가액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을 각각 달리 설정하였다. 또한 1991년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살인, 유괴, 강간, 강도 등의 특정 강력범죄의 누범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

28) 신동준, 앞의 논문, 163면 이하.

29) 형사특별법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박광현, 형사특별법으로부터 형법의 복권,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2012), 214면 이하 참조.

였다. 1994년에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이나 이를 폐지하고 2010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도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또한 2000년에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형법에 비하여 크게 상향 조정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다.

나. 유기자유형의 상한 2배 가중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형법은 유기형의 상한을 종전의 15년에서 30년으로 높이고, 가중할 경우 종전의 25년에서 50년으로 상향 조정하였다(제42조). 아울러 무기형의 가석방요건을 종전의 10년에서 20년으로 높였고(제72조 제1항), 사형을 감경하는 경우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무기형을 감경하는 경우 종전의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제55조 제1항).³⁰⁾

이처럼 형법총칙을 개정하여 유기자유형의 상한을 2배 가중하였다는 것은 형법 각칙과 특별형법에 법정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는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의 장기를 일괄적으로 2배 가중하였다는 의미다.³¹⁾ 예컨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범죄의 경우 종전의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할 때는 종전의 ‘1년 이상 25년의 징역’에서 ‘1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특정범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설정하거나 상향 조정하거나 상습범·누범의 법정형의 장·단기 가중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와 같이 일괄적으로 모든 - 법정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는 - 범죄에 대해서 법정형의 상한의 2배 가중은 형법제정 이후 경험해보지 못했던 “획기적인” 형벌제도 변경에 속한다.³²⁾

30)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인상하고 가석방요건을 강화한 형법 개정과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인석/임정엽, 개정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조정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2010), 34면 이하 참조; 개정형법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김성규, 흉악범죄와 형사입법, 외법논집 제34권 제2호(2010.5), 202면 이하 참조.

31) 같은 취지로 한인섭 외 5인 공저, 형법개정안과 인권 (2010), 6면 이하.

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비판으로는

2. 형벌가중의 기대효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형벌가중정책을 펴왔음을 알 수 있다.³³⁾ 이러한 형벌가중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의 하한 설정이나 그 상·하한의 상향 조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법정형 상향조정의 일차적 목표는 범죄자를 종전에 비하여 더 중하게 처벌하여 범죄억제효과를 높이하고자 함에 있다. 여기에는 형량상승이 범죄억제효과로 이어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벌해악에 의한 범죄억제는 환상이며, 중벌주의 입법의 대부분은 실제에 있어 범죄억지효력을 증명할 수 없는 상징입법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보복감정에 부응하는 인기영합적인 소위 포퓰리즘 입법의 전형이다”라는 강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³⁴⁾ 그러나 외국의 실증적 연구조사들을 살펴보면, 형량의 상승이 약간의 범죄억제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다.³⁵⁾ 다만, 범죄자가 형사제재를 받을 확률(이하 ‘제재확률’)이 증가하면 범죄억제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양형의 범죄억제효과는 부분적인 것으로 나타나 형량과 범죄율 간의 상관관계는 현저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즉, 형량의 상승과 제재확률의 상승은 모두 범죄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양형보다는 제재확률이 더 큰 범죄억제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재산범죄와 대인범죄(또는 강력범죄)를 나누어 서로 비교하면, 양형의 범죄억제효과가 대인범죄(또는 강력범죄)에 비하여 재산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오는 연구결과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정욱 박사팀이 대검찰청의 용역을 받아 1970년부터 2009년까지 40년간의 사법통계자료를 토대로 살인·폭력·강간·방화 등의 강력범죄와 사기·횡령·배임·공갈 등의 재산범죄를 구별하여 양형의 범죄억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있다.³⁶⁾ 이에 따르면, 재산범죄의 범죄율은

한인섭 외 5인 공저, 앞의 책, 8면 이하 참조.

33)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가중정책의 이론적 한계에 대해서는 한영수, 강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범죄예방정책연구 제20호(2008.12), 55면 이하 참조.

34) 이재석, 형벌의 중벌화 입법경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제44집 (2011.11.25.), 199면

35) 외국의 주요 실증연구 사례는 김정욱/채수복,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1년 대검찰청 용역과제 보고서, 5~17면, 32~70면 참조.

36) 김정욱/채수복, 앞의 보고서, 18~24면, 71~83면 참조.

체포율, 기소율, 평균형량, 실업률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시됐고, 강력범죄의 범죄율은 기소율과 평균형량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와 강력범죄 모두 형량이 증가하면 범죄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범죄의 경우 현재의 양형보다 10% 높은 수준의 형량이 부과된다면 범죄율은 3.92%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고, 강력범죄의 경우 평균형량이 10% 높게 부과된다면 범죄율은 4.6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³⁷⁾ 평균형량을 지금 수준보다 높이면, 강력범죄가 재산범죄에 비하여 그 범죄율의 하락폭이 오히려 더 클 것이라는 연구결과다. 이것은 외국의 실증적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다. 또한 제재확률과 관계가 깊은 기소율을 1% 증가시키면, 범죄율이 재산범죄의 경우 0.96%, 강력범죄의 경우 1.11%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다.³⁸⁾ 제재확률상승의 범죄억제효과가 평균형량 증가의 범죄억제효과보다 2~3배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것은 외국의 실증적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다. 1999~2000년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을 받은 강간범과 강도범을 8년간 추적하여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라 형량이 낮은 자의 재범률이 형량이 높은 자의 재범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는 사실도 간접적으로나마 형량상승이 재범방지의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하려는 견해도 있다.³⁹⁾

법정형의 상향조정이 형량의 상승으로 이어져 범죄를 억제하리라는 기대효과가 형벌가중정책의 기반에 깔려 있지만, 이러한 직접적 효과 이외에도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행위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특정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를 표방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공포와 치안에 대한 불안감에 싸여 있는 일반시민들을 진정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중형주의 내지 엄벌주의는 ‘상징입법’ 내지 ‘포폴리즘입법’의 결과라는 비판은 적어도 이 한도 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법정형 상향 조정의 실효성 분석

형량증가가 범죄억제효과로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법정형의 상향조정이 지속되

37) 김정욱/채수복, 앞의 보고서, 81~82면.

38) 김정욱/채수복, 앞의 보고서, 80~82면.

39) 조은경, 강간범죄와 강도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 양형인자 추출연구, 대법원 2008년 용역결과.

어 왔으므로, 이러한 형벌가중정책의 실효성 여부는 먼저 법정형의 상향조정이 법관의 양형단계에서 실제로 형량증가효과를 가져왔는지 분석해야 한다. 즉, 입법자가 특정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했을 때 그것이 법관의 양형에 그대로 반영되어 특정범죄에 대한 형량상승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에 개별범죄의 양형을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고형이 주로 법정형의 하한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⁴⁰⁾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록 오래 전의 조사이지만, 법관들이 양형을 할 때에 종래의 양형관행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⁴¹⁾ 이하에서는 극단적인 법정형의 상향조정이 있었던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특히 강간사건)에 관한 양형기준과 양형실태를 중심으로 법정형 상향조정이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해보기로 한다.

2007년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설치되어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하여 강간범죄, 교통범죄, 뇌물범죄, 마약범죄, 살인범죄의 양형실태를 분석하였는데, 그 중 강간범죄는 16개 죄명의 134명의 피고인을 조사하였다.⁴²⁾ 이에 따르면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모두 24명으로 17.9%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10명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구)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12명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었다(8월 이하 1명, 10월 이하 4명, 1년 이하 4명, 1.5년 이하 1명, 2년 이하 1명, 3년 이하 1명). 조사대상 선별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죄(성폭력특별법위반)에 대한 양형의 전반적 경향성만큼은 읽을 수 있다. 1997년 성폭력특별법개정을 통해 ‘13세 미만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강간’죄의 법정형을 기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40) 이재상/박미숙, 강도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년 보고서, 65-66면; 이병기, 강력범죄의 양형,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4호(1994), 91면; 이상용, 법정형과 선고형의 적정화를 위한 모색, 양형연구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1996), 98-102면 참조.

41) 오영근 외4인, 바람직한 양형기준제와 양형위원회 운영의 방식에 관한 연구, 2010년 대검찰청 용역과제 보고서, 14면 각주 12 참조.

42) 대법원, 양형위원회, 2008년 연간보고서 130~131면.(<http://sc.scourt.go.kr/sc/board>)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07년 조사시점까지는 법정형 하한의 상향조정이 법관의 양형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2008년 6월 13일 (구)성폭력특별법의 개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의 경우 또 다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법정형의 하한이 상향조정되었는데,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은 “5~7년의 징역”(기본), “4~6년의 징역”(감경), “6~9년의 징역”(가중)으로 정한 바 있다. 기본은 물론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정형의 하한을 하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제1기 양형기준은 2010년 4월 15일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으로 13세 미만의 여아를 대상으로 한 강간의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법정형의 하한이 상향조정된 이후에도 2010년 6월 29일 수정되고 2010년 7월 15일 개정되기까지 유효하였다. 제1기 양형기준이 유효했던 시점인 2009년 7월 1일 이후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공소 제기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성범죄 사건 248건을 대상으로 제1기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다.⁴³⁾ 이에 따르면, 13세 미만대상의 강간(당시 양형기준상의 제3유형)범죄는 총 36건이었는데 그 중 3~6년의 징역형이 21건을 차지했으며, 제3유형 감경사건의 경우 36~84개월 사이에 선고되어 평균형량은 55개월이었고, 제3유형 기본사건의 경우 24~120개월 사이에 선고되었으나 평균형량이 57.65개월로 양형기준 하한구간보다 낮았으며, 가중사건의 경우에는 양형기준 권고구간 내에서 선고되었다.⁴⁴⁾ 또한 13세 미만 대상의 강간(당시 양형기준상의 제3유형)사건 36건 중 17건이 권고구간 내에 선고되어 47.2%의 부합률을 보이고, 15건(41.7%)은 하한구간을 이탈했으며, 4건(11.2%)은 상한구간을 이탈했다.⁴⁵⁾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3유형의 감경사건의 부합률은 50%, 기본사건의 부합률은 39.1%, 가중사건의 부합률은 60%을 보였으며, 조사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총 248건의 전체 부합률은 57.7%에 해당하였고, 40.3%가 하한구간을 이탈하였다고 한다.⁴⁶⁾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사

43) 박미량/이민석,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저스티스, 통권 제127호(2011.12), 346~373면.

44) 박미량/이민석, 앞의 논문, 357면.

45) 박미량/이민석, 앞의 논문, 362면.

46) 박미량/이민석, 앞의 논문, 362면.

건에 국한된 연구결과라는 점에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제1기 양형위원회가 법정형의 하한을 하회하는 구간을 양형기준으로 정하였고,⁴⁷⁾ 실제 법원의 양형단계에서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양형기준상의 권고구간의 하한을 이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양형위원회는 아동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2010년 6월 29일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였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수정된 양형기준이 2012년 3월 26일 개정되기 전까지 유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강간(당시 유효했던 양형기준상의 제4유형)은 기본사건의 경우 “7~10년의 징역”, 감경사건의 경우 “6~9년의 징역”, 가중사건의 경우 “9~13년의 징역”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 기준이 유효했던 기간인 2010년 7월 15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공소 제기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사건 총 155건의 양형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⁴⁸⁾ 강간(제4유형)사건 31건 중에서 18건이 6년~9년의 징역이 선고되어⁴⁹⁾ 3~6년의 징역에 몰려 있던 제1기 양형기준에 의할 때보다 평균형량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전체 31건 중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29건이 법정형의 하한을 하회하고 있다. 또한 13세 미만 대상 강간(제4유형) 중 양형기준 부합률은 기본사건의 경우 40%, 감경사건의 경우 33.3%, 가중사건의 경우 33.3%였으며, 하한이탈은 각각 60%, 33.3%, 66.6%에 이르렀다.⁵⁰⁾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양형기준은 또 다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강간의 죄에 대해서는 기본사건의 경우 “8~12년의 징역”, 감경사건의 경우 “6~9년의 징역”, 가중사건의 경우 “11~12년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 기간 중의 양형실태에 관한 분석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입법

47) 법정형보다 낮은 기본 형량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양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송재현,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모델의 타당성 평가, 법조 통권 640호(2010.1), 113면 이하 참조.

48) 심재철, 강력범죄 양형실태 및 개선방향, 제16회 경기지역 법학실무연구회(2012.11.28.) 학술대회 발표자료, 62면. 이 자료는 대검찰청 연구용역결과(박미량/이민석, 앞의 논문)의 발췌 요약임.

49) 형기 2년 미만 1건, 3년 미만 2건, 4년 미만 5건, 5년 미만 1건, 6년 미만 2건, 7년 미만 7건, 8년 미만 5건, 9년 미만 6건, 11년 미만 1건, 13년 미만 1건이었다.

50) 심재철, 앞의 발표자료, 63면.

자에 의한 법정형의 상향조정이 법관의 양형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던 것 같다.⁵¹⁾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동안의 법관의 양형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쉽게 평균형량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향도 있었다.⁵²⁾ 즉, 법정형의 가파른 상승이 곧바로 양형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관의 양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 같다. 다만, 법정형의 상향조정이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양형위원회로 하여금 양형기준을 수정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다. 양형기준이 있기 전까지는 법정형의 상향조정은 양형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단지 상징적 효과만 있었지만, 이제는 법정형의 상향조정이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을 시간차를 두고 약간 수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수정된 양형기준이 법관의 양형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형기준이 법관의 양형에 100% 그대로 반영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법정형의 상향조정이 양형기준의 수정으로 이어지고, 수정된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의 증가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형량증가가 해당 범죄의 억제효과로 이어져야 법정형의 상향조정의 실효성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식적인 범죄통계상으로는 성폭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물론 피해신고의 증가와 범죄인지를 상승에 따른 암수범죄의 감소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흉악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폭력범죄가 공식적 범죄통계상에서 볼 수 있는 급증은 아니더라도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적어도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는 “법정형 상향조정 ⇒ 형량의 상승 ⇒ 범죄억제효과 제고”의 가설에 따른 형벌가중의 효과는 실제로는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법정형의 상향조정이 실제로 법관의 양형단계에서 형량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자가 의도한 범죄억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⁵³⁾

51) 법관의 선고형량과 일반인의 요구형량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비판으로는 이창환,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법관과 일반인의 인식차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4호(2009), 295면 이하.

52) 같은 취지로 성도경/이지영, 이동성폭력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6권 제2호(2012.6), 258면.

53) 비슷한 취지에서 허경미, 이동성범죄자의 재범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3호(2008), 60면 이하 참조.

IV. 보안처분 확대 · 강화 정책의 실효성

1. 새로운 보안처분의 도입 및 확대 적용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확대정책은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강화되었다. 오히려 2000년대 초반에는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었고, 결국 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안처분의 축소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이어서 발생한 아동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살인)사건으로 인하여 기존의 형벌가중정책만으로는 이러한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기존 보안처분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새로운 보안처분의 도입 및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7년 8월 3일부터 전자감독(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가, 2011년 7월 24일부터는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2000년 2월 3일에 도입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처음에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행되다가 2009년 9월 6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였고, 2010년 4월 5일에는 신상정보의 공개방법으로 인터넷 열람 이외에 우편고지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2010년 4월 5일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여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였다(제8조의2).⁵⁴⁾ 또한 2012년 11월 21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또한 ‘물리적 거세 제도’의 도입 및 보호감호(보호수용)의 재도입 논의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의 확대 · 강화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새로운 보안처분의 도입, 둘째는 보안처분의 적용대상 확대, 셋째는 보안처분의 제재강도 강화다. 이러한 보안처분의 확대 · 강화정책은 특정 범

54) 박찬걸, 아동대상 강력범죄 방지를 위한 최근의 입법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4호(2010.6), 79면 참조.

죄의 억제효과를 거두기 위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실효성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기도 전에 보안처분의 확대·강화정책이 선제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하에서는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 새로이 도입되어 시행 중인 전형적인 보안처분인 ‘전자감독’,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신상공개’제도가 어느 정도 그 실효성에 관한 검증작업이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실증적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2.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

가. 전자감독의 적용대상 확대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확장

2007년 4월 27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성폭력범죄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전자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9년 5월 8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률 명칭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2010년 4월 15일에는 살인범죄자도 전자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이 법률 시행 이전에 범한 죄로 1심판결을 선고받아 형복역 중이거나 출소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감독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⁵⁾ 또한 2012년 11월 22일에는 전자감독을 강도범죄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명칭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률’)로 개정하였다.

전자감독은 집행유예나 가석방의 조건으로 부과될 수 있고, 징역형 종료 후의 보안처분으로도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유예나 가석방의 조건으로 부과되는 전자감독은 어느 정도 형벌 완화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징역형 종료 후의 전자감독은 순수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징역형 종료 후의 전자감독의 경우 전자장

55)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2012.12.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치 부착법률이 처음 제정될 때에는 그 부착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했으나, 이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인 2008년 6월 13일 최장 10년으로 높였고, 2010년 4월 15일에 다시 개정하여 최장 30년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아울러 해당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도 설정되었다. 즉, 전자장치 부착법률 제9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10년 이상 3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확장하고 그 하한을 설정한 것은 전자감독의 제재 강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나. 전자감독의 기대효과

전자감독의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전자감독의 요건을 소급하여 적용하고, 전자감독의 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증대하는 등의 일련의 전자감독 확대·강화정책을 펴는 데는 전자감독의 재범억제효과가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한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고통과 수치심을 안겨주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처벌욕구를 더 충족시키려는 징벌성의 의도도 담겨 있다.

그러나 전자감독의 범죄억제효과와 더불어 그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의 효과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특정범죄의 완벽한 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제재확률을 높임으로써 재범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효과는 재범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출소 후 일정 기간’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함께 받게 함으로써 극대화될 수 있다.

다. 전자감독의 실효성 분석

전자감독의 범죄억제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률을 비대상자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시행 3주년을 맞이하여 그 시행성과에 대해 보도 자료를 낸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08.9.1.부

터 2011.8.30.까지 총 1,526명이 전자감독을 받았고, 그 중 전자감독 기간 내에 재범한 자는 총 21명(성폭력범죄 13건)으로 1.37%의 재범률을 보였으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이 2005년부터 2009년 중에 검거된 일반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 15.1%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자감독이 대상자의 재범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발찌 시행 3년 동안 전자감독을 받은 누적인원 1,526명 가운데 가석방자가 1,069명으로 전체의 70.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재범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가석방자의 경우 형기만료에 의한 출소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유형에 속하고, 가석방기간도 대체로 짧기 때문에 그 기간 중의 재범률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석방자나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전자감독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형기종료 후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만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비대상자 그룹의 재범률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재범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출소 후 3년 기간 동안⁵⁶⁾ 형기종료 후 전자감독의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재범률을 비교하면 더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감독의 범지역제의 효과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파악하려면, 전자감독 종료자를 대상으로 최소 3년 정도의 범죄부화기간을 보낸 후 범죄경력조치를 통한 중단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⁵⁷⁾ 다만,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전자발찌 시행 3년 동안 전자감독을 받은 성폭력사범 1,051명 중에서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3명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은 적어도 “전자감독을 받는 기간 동안” 재범을 하면 발각될 가능성, 즉 제재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범지역제효과가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전자감독의 실효성에 관한 외국의 실증적 연구는 있지만,⁵⁸⁾ 우리나라와의 법제도

56) 출소 후 3년 이내의 재범률에 대해서는 홍영오, 강력범죄의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2012), 84면 이하 참조.

57) 조운오,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저항이론 관련요인 분석,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2호(2010 · 여름), 312면.

58) 전자감독의 실효성에 관한 외국문헌상의 연구결과에 관한 간략한 소개는 박선영, 전자감독제도의 정비방안,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 201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31~33면과 강호성,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 박사학위논문(2012년 6월), 37~42면 참조.

적인 차이점과 그 시행방식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전자감독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우리나라의 실증적 연구는 현재까지 4건 정도 있다.

2009년 4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전자감독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자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⁵⁹⁾ 전자발찌 착용기간이 비교적 짧게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감독 종료자의 대다수가 전자발찌 부착경험을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처벌로 인식했고, 설문 응답자의 82.6%가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가급적 불법행동을 피하려고 노력했다”는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범죄억제력과 관련된 추가문항들에서도 일관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전자감독이 범죄억제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⁶⁰⁾ 또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보다는 전자감독을 선호하고, 자신의 처벌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 태도를 보였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더 높은 범죄억제력 점수를 얻어 전자감독이 교도소구금보다 더 완화된 형벌이라고 느껴야 긍정적인 범죄억제력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⁶¹⁾

전자감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자감독을 받은 성폭력범죄자 186명(실험집단)과 일반 보호관찰대상자 104명(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이 준수사항 위반 행동 측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⁶²⁾ 범죄자가 의도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할 확률이 전자감독대상자가 일반보호관찰대상자에 비하여 81.8% 감소했다.⁶³⁾ 그 이유는 전자감독대상자들이 24시간 감시받는다라는 생각에 따른 심리적 긴장감이 일반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비하여 더 커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반면, 특정 범죄유혹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벗어날 확률은 전자감독대상자가 일반보호관찰대상자에 비하여 오히려 63.2% 더 적게 나타났다.⁶⁴⁾ 즉, 전자감독대상자가 일반보호관찰대상자보다 범죄유혹을 자발

59) 조윤오,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7호(2009), 481~511면.

60) 조윤오, 앞의 논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7호(2009), 504면.

61) 조윤오, 앞의 논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7호(2009), 504~505면.

62) 조윤오, 경향성 점수(propensity scores)를 활용한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 분석: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9호(2010), 367~395면.

63) 조윤오, 앞의 논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9호(2010), 386면.

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실험집단 186명을 상대로 전자감독의 저항이론 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자감독 대상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재판이 불공평했다고 인식할수록, 발찌를 차고 외출할 때 수치심을 많이 느낄수록, 보호관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이와 비례하여 전자발찌 착용의 고통 정도는 더 증대하고, 그만큼 불법행동을 피하려는 경향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⁵⁾ 또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수치심이 클수록 전자장치 부품절단, 장치훼손 등의 심각한 준수사항 위반행동으로 나아갈 충동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⁶⁾

2010년 5월 26일부터 6월 29일 사이에 전자감독대상자 20명과 그들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실무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자감독의 목적에 대해 대상자의 다수가 ‘처벌’로 응답한 반면 실무가들은 모두 ‘범죄예방’이라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고, 20명의 대상자 중에서 12명은 전자감독이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자감독 때문에 재범억제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응답한 반면, 8명은 전자감독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재범억제효과가 있다고 보았다.⁶⁷⁾ 전자감독대상자 대부분은 자신들이 전자감독의 적정한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들의 경우 전자감시와 보호관찰관의 방문으로 인해 가족에게 미안하고 가족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자발찌 부착자라는 것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항상 긴바지를 입고 목욕탕에 가지 않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자발찌를 숨기기 위해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말하였고, 3명의 대상자는 자살충동까지 경험했다고 토로했다.⁶⁸⁾ 대부분의 실무가들도 전자감독으로 인해 대상자들의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전자감독으로 인하여 대상자들이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고 한다.⁶⁹⁾

64) 조운오, 앞의 논문, 한국공안행정학회 제39호(2010), 387면.

65) 조운오,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저항이론 관련요인 분석,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2호(2010 · 여름호), 305면 이하.

66) 조운오, 앞의 논문,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2호(2010 · 여름호), 308면 이하.

67) 박선영, 앞의 보고서, 37면.

68) 박선영, 앞의 보고서, 38면 이하.

69) 박선영, 앞의 보고서, 39면.

2011년 12월에 형기종료 후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재범이나 전자장치 훼손 및 신호실종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재범집단 46명과 그러한 행위가 없었던 비 재범집단 158명으로 비교하여 재범예측요인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월수입이 50만원 증가할수록 재범가능성이 24% 감소하고, 성범죄전력이 1회 많을수록 재범가능성이 약 1.54배 증가하며, 보호관찰관의 사회적 지지가 한 단위 감소할수록 재범가능성이 약 1.05배 증가하고,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한 단위 감소할수록 재범가능성이 약 1.0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감독의 시행기간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증적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전자감독의 재범억제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앞의 선행연구들은 향후 전자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적 조사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전자감독의 시행초기 단계에 진행된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전자감독의 긍정적 효과를 더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재범방지에 있어서 전자감독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재범방지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로 높이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3. 화학적 거세 및 신상공개제도 등의 실효성

가.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실효성 분석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도입과정에서 그 정당성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⁷¹⁾ 2011년 7월 24일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최장 15년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른바 ‘성충동약물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⁷²⁾ 극단적인 성적 충동을 스스로 억제할 수 없

70) 강호성, 앞의 학위논문, 102면 이하.

71) 헌법적 문제점에 관해서는 이상경,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처분의 헌법적 재조명, 헌법판례연구 제11호(2010.2), 93~122면; 황성기,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2008), 132면 이하; 허순철, 성충동 약물치료의 헌법적 쟁점, 토지공법연구 제57집(20125), 412면 이하 참조.

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강제로 약물을 투여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법 시행 이후 2013년 2월 8일 대전지방법원이 위헌제청을 하기까지⁷³⁾ 우리나라에서 약물치료명령은 2건밖에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그러나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에 관하여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⁷⁴⁾ 첫째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성도착증에 대한 판정과 진단은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이를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감별에 의한 허위부정오류보다는 허위긍정오류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비판이 있다. 둘째는 약물치료의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⁷⁵⁾ 남성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장기간 투여할 경우 만성피로, 두통, 우울증 등의 부작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약물투여의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약물치료를 통해 성폭력범죄자들의 성욕을 감퇴시킬 수는 있지만 성기능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외국의 사례를 들어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며, 약물치료의 부작

72)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윤웅장, 성폭력법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범죄예방정책연구 22호(2010.12), 25면 이하 참조.

73) 2013년 2월 8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피치료자의 동의 없이 부과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74) 김현우/임유석,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국대 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2호(2011.8), 96~99면; 류병관, 성충동약물치료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전남대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2012.8), 437~440면; 박봉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형사정책적 검토, 법학연구 제47집(2012.8), 185면; 박상기, 소위 화학적 거세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3호(2010·가을), 214면 이하; 박찬중/송주영,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3권 제1호(2011.6), 236면 이하; 신종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민대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2011.2), 73~75면; 신동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평가, 형사정책 제23권 제1호(2011.6), 265면 이하; 이동명/박현정, 상습적 성범죄자처우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42집(2011.5), 228면; 이보영/홍기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정당성 및 실효성 검토, 외법논집 제35권 제4호(2011.11), 226면 이하;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조사된 화학적 거세의 효과에 관한 간략한 설명은 강은영/황만성, 상습적 성폭력범죄자 거세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2010), 46면 이하 참조.

75) 화학적 거세 약물의 종류와 약물투여의 효과 및 그 부작용에 관한 의학적 설명은 문수진/민정원/박건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정신약물학회지 (2011), 121면 이하 참조.

용도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⁷⁶⁾

나.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 분석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혐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도입된 지 이미 12년이 흘렀으며, 그 동안 수차례의 법률개정을 통해 현재는 법원의 판결로 공개명령을 하고, 그 집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외의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신상공개의 집행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있다.⁷⁷⁾ 신상정보의 공개도 처음에는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에서 이제는 직접적이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범죄자 거주 인근 주민에게 우편고지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의 재범억제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구조사가 있었다. 첫째,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초기인 2002년 10월에 고교생과 성인 1,4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효과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을 실제로 감소시키는 지 여부는 연구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⁷⁸⁾ 둘째, 2004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총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상공개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일반국민들의 대다수가 신상공개자 명단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⁹⁾ 셋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에 일반인

76) 황일호,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56호(2012.9), 62~63면; 허경미,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49호(2010), 158면 이하.

77)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법학 제33권(2011.6), 388면 이하; 등록 및 재등록과정에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면 신상등록대상자의 관리를 보호관찰과 연계 하도록 신상등록 및 공개업무가 법무부로 단일화 되어야한다는 견해로는 김지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평가연구(I) -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2012), 421면과 426면 이하.

78) 신준섭/이영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18호(2004), 57면; 이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이종갑,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책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8집 제1호(2008.6), 16면 이하.

2,400명, 신상공개대상자 약 300명, 신상공개업무종사자 7명,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보호자 12명, 아동성폭력피해자 지원실무가 5명, 우편고지 주민 3명에 대한 설문/면접조사, 2010년 아동성폭력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대상이 된 범죄자 955명과 성범죄알림에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판결문을 전수조사방식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분석한 연구결과가 있다.⁸⁰⁾ 이에 따르면, 신상공개제도가 일반시민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검거된 성폭력범죄자 중 초범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제도가 잠재적인 범죄자의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효과가 크지 않으며, 동종재범자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므로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에 대해 특별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⁸¹⁾

특정강력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조사는 아직까지는 없다.⁸²⁾ 다만, 추가범죄에 의한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교육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증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있다.⁸³⁾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오히려 신상공개자의 사회복귀를 저해하고, 일반시민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범

79) 이영란 외 3인, 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80) 김지선, 앞의 보고서.

81) 같은 취지에서 김해정,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2007·가을호), 883면; 정신교,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방적 효과, 법학연구 제39집(2010.8), 281면 이하; 이경재, 앞의 논문, 392면 이하; 이종갑,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범정책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8집 제1호(2008.6), 18면; 정은경,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배경에 대하여, 한국법학회, 제5권 제2호(2011), 325면 이하; 반면, 미국 텍사스 주의 ‘성범죄자 등록법률’이 시행 직후에는 강간범죄율에 유의미한 감소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2년의 시차를 두고 강간범죄율의 감소효과로 이어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최웅렬/장현석/이창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2007), 383면.

82) 다만,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일반시민의 정책선호도를 조사한 논문으로는 신현주,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정책 선호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호(2010), 111면 이하 참조.

83) 정철호,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12 No. 7, 161면 이하;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논거는 이용식,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과 공익성의 의미 검토,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제33집(2011.9), 33~39면; 강동욱,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2호(2009·여름호), 5면 이하.

죄역제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 특히 신상공개자와 비공개자의 재범률을 장기간 추적 조사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법정형의 상향조정’과 ‘보안처분의 확대·강화’로 요약될 수 있는 우리나라 형벌정책은 그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대중매체에 의하여 재구성되고 심지어 가공된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공포로 형성되는 측면이 강하다. 형벌가중이나 보안처분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성난 여론에 묻혀 버리고 다분히 상징적인 형벌가중이나 새로운 보안처분의 도입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형벌가중정책이나 보안처분의 확대정책의 이면에는 형벌가중과 보안처분의 확대가 재범억제효과 내지 범죄방지효과가 있다는 일반대중의 신뢰가 깔려 있다. 물론 형벌가중이나 보안처분의 활용이 범죄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위험한 범죄자’가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러나 형사제재의 효과에 대한 과도한 신뢰와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실효성 없는 제재강화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다. 형사정책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선택하였다면, 그 수단(형사제재)이 설정된 목표(범죄예방)의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위험한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새로운 보안처분을 도입하려면, 먼저 이 보안처분을 시범적으로 활용해보면서 장기간 그 실효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즉, 새로운 보안처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작용을 비교하여 긍정적인 요소는 강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감소시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형벌가중정책의 실효성, 즉 법정형 상향조정의 실효성도 검증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조정이 형량증가로 이어지고, 그 결과 범죄억제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무조건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는 것은 단지 상징적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양형기준제도의 시행에 따라 형벌가중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동욱,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2호(2009 · 여름호)
- 강은영/박형민,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2008)
- 강은영/황만성, 상습적 성폭력범죄자 거세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2010)
- 강호성,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송신태 박사학위논문(2012)
- 고비환, 선정적 범죄보도가 중형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그 완화책으로서 사회적 관용의 필요성,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제32집 제2호(2012.8)
- 권오걸, 현행 보안처분제도 개관, 법학논고 제22집(2005.6)
- 권인숙/이화연,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 언론의 아동 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50권 2호(2011)
- 김두얼/김지은,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한국개발연구원 제31권 제2호(2009)
- 김상균,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3호(2009)
- 김상호, 성폭력특례법 제7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제54호(2012.2)
- 김성규, 흉악범죄와 형사입법, 외법논집 제34권 제2호(2010.5)
- 김정욱/채수복,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1년 대검찰청 용역과제 보고서
- 김지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평가연구(I) -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2012)
-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2011 · 가을호)
- 김현우/임유석,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국대 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2호(2011.8)

- 김혜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현황과 개선방안, 보호관찰 제10권 2호(2010)
- 김혜정, 보안처분제도의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2호(2004 겨울) 특집호
- 김혜정,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가을호)
- 류병관, 성충동약물치료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제32집 제2호(2012.8)
- 문수진/민정원/박건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정신약물학회지 (2011)
- 박경철, 최근의 성범죄 대응방안의 헌법적 문제점, 강원법학 제33권(2011.6)
- 박광현, 형사특별법으로부터 형법의 복권,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2012)
- 박미량/이민석,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저스티스, 통권 제127호(2011.12)
- 박봉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형사정책적 검토, 법학연구 제47집(2012.8)
- 박상기, 소위 화학적 거세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3호(2010·가을호)
- 박선영, 전자감독제도의 정비방안,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2010)
- 박순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호(2003)
- 박찬걸, 아동대상 강력범죄 방지를 위한 최근의 입법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4호(2010.6)
- 박찬종/송주영,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3권 제1호(2011.6)
- 선종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민대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2011.2)
- 성도경/이지영, 아동성폭력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6권 제2호(2012.6)

- 송영지,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제도의 소급효,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4호(2011 · 겨울호)
- 승재현,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모델의 타당성 평가, 법조 통권 640호 (2010.1)
- 신동준, 현대 사회의 ‘괴물’, 사이코패스 이해하기, 현상과 인식 2011 봄 · 여름호
- 신동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평가, 형사정책 제23권 제1호(2011.6)
- 신준섭/이영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18호(2004)
- 신현주, 강력법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정책 선호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호(2010)
- 심재철, 강력범죄 양형실태 및 개선방향, 제16회 경기지역 법학실무연구회 (2012.11.28.) 학술대회 발표자료
- 안성조,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 형사법연구 제20권 제4호(2008 · 겨울)
- 안성조/서상문, 사이코패스 I (2009)
- 양정혜, 뉴스 미디어가 재현하는 범죄현실: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프레이밍, 언론 과학연구 제10권2호(2010.6)
- 원형식, 상습범과 누범의 가중처벌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2호(2004 겨울) 특집호
- 원혜옥,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보호관찰 제12권 제2호(2012년)
- 윤영철,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2008 가을호)
- 윤웅장, 성폭력법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범죄예방정책연구 제22호(2010.12)
- 오영근 외 4인, 바람직한 양형기준제와 양형위원회 운영의 방식에 관한 연구, 2010년 대검찰청 용역과제 보고서
-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법학, 제33권 (2011.6)

- 이동명/박현정, 상습적 성범죄자처우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42집 (2011.5)
- 이보영/홍기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정당성 및 실효성 검토, 외법논집 제35권 제4호(2011.11)
- 이병기, 강력범죄의 양형,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4호(1994)
- 이상경,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처분의 헌법적 재조명, 헌법판례연구 제11호(2010.2)
- 이상용, 법정형과 선고형의 적정화를 위한 모색, 양형연구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1996)
- 이영란 외 3인, 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 이용식, 피의자 신상공개에의 정당성과 공익성의 의미 검토,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제 33집(2011.9)
- 이인석/임정엽, 개정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조정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2010)
- 이종갑,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8집 제1호 (2008.6)
- 이주일, 형법개정과 형법의 제한적 역할, 법학연구 제42집(2011.5.25)
- 이재상/박미숙, 강도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년 보고서
- 이재석, 형법의 중벌화 입법경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제44집 (2011.11.25.)
- 이창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법관과 일반인의 인식차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34호(2009)
- 정신교, 성범죄자 신상공개에의 예방적 효과, 법학연구 제38집(2010.8.25)
- 전영실 외 28인 공저,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 정은경,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배경에 대하여, 한국범죄학, 제5권 제2호(2011)
- 정재준, 물리적 거세법안의 의료법적 성격과 한계,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제1호

(2012)

정철호,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권 7호 (2012)

조운오,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7호(2009)

조운오, 경향성 점수(propensity scores)를 활용한 저자감시제도의 효과성 분석: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9호(2010)

조운오,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저항이론 관련요인 분석,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2호(2010 · 여름호)

조은경, 강간범죄와 강도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 양형인자 추출연구, 대법원 2008년 용역결과

최상욱,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2011)

최상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제31권 제3호(2011.12)

최석윤, 사이코패스 범죄보호 젠더 담론, 충남대 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1호(2010)

최응렬/장현석/이창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2007)

최인섭/김성연,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1996)

최준혁, 형사정책적 수단의 범죄예방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 보호관찰 제12권 2호 (2012년)

한상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I) - 고위험범죄자관리에서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의 협력강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2012)

한상암/신성원,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실태 및 경찰의 효율적 대처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2호(2006)

한영수, 강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범죄예방정책연구 제20호

(2008.12)

한인섭 외 5인 공저, 형법개정안과 인권 (2010)

허경미,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49호(2010)

허경미,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3호 (2008)

허순철, 성충동 약물치료의 헌법적 쟁점, 토지공법연구 제57집(2012.5)

홍영오, 강력범죄의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2012)

홍지아, 신문기사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성폭력의 의미구성: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3권 제5호(2009)

황만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최근 경향과 쟁점, 한양법학 제22권 제2집(2011.5)

황성기,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2008)

황일호,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56호(2012.9)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http://hdr.undp.org/en/media/HDR_2010_EN_Complete_reprint.pdf)

Walter, Kriminologische und kriminalpolitische Probleme mit “gefährlichen Straftäter”, Rehn/Wischka/Lösel/Walter(Hrsg.), Behandlung “gefährlicher Straftäter”, 2001

The Effective Criminal Sanction Against the Serious Violent Offenders

Han, Young Soo*

Criminal penalty for sex offenders who are so called 'serious violent offenders' is getting stronger every year. New criminal Bill for sex offenders includes strict policy for serious violent offenders and the introduction of sex offender notification,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chemical castration is one of examples of it. The strict policy for the serious violent offenders is followed by lots of questions about justification and effectiveness. However the atmosphere of terror which is caused by repeated serial murder incidents and rape for kids let legislators make strict policy and introduce security measures from other countries without enough consideration.

This report is focused on the effectiveness of strict policy and security measures. Taking a check the relation between planned goal and chosen means is one of good methods to study about the effectiveness, so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hat the goal is and then check whether the goal comes true or not by strict policy and Security Measures.

The study method is to hunt out the knowledge in literature survey which are performed in Korea so far. To specific, the study starts from definition of serious violent offenders and fluctuation of Malicious Crime. Second, the report shows about whether stronger Statutory Penalty is effective or not for Reducing Recidivism. Lastly, the study shows especially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Korean criminal penalty policy such as stronger Statutory Penalty and

* Professor, Lawschool, Ajou University

expansion of Security Measures encounters criticism that the policy is made up without enough consideration. Also the public believe that criminal penalty policy such as stronger Statutory Penalty and expansion of security measures can prevent from occurring crimes and recidivism. However excessive faith on the effect of criminal penalty can make overlook the process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sanction against the serious violent offenders. In conclusion, new security measures for preventing recidivism needs to be introduced with discretion. In addition, comparing positive effects with negative ones and enhancing positive effects is important thing. The effectiveness of maximum sentences policy should be verified by experiential studies.

❖ Key words : serious violent offenders, sex offenders, criminal penalty, sentencing guideline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